

#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오중석 의원 (대표) 발의)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061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년월일 : 2019년 10월 15일

발 의 자 : 오중석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이병도, 이영실, 김정환, 최기찬,  
송아량, 이승미, 이은주, 우형찬,  
송도호, 성중기, 추승우, 김태호  
의원 (12명)

## 1. 제안 이유

- 특수여객운송사업 관련 업체의 무분별한 증가로 인해 행정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, 이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, 특수여객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의 상향을 통해 무분별한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여 안전관리 강화와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

## 2. 주요 골자

가.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제12호)

나.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해 규정함(안 제15조)

### 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  
규칙

나. 예산 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#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“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”이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 
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특  
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래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(유골을 포함한다)를  
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,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등) ①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
및 별표 3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대수는 5대 이  
상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송부대시설 중 사무실  
및 영업소를 갖추어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제15조 (생략)

제16조 (현행 제15조와 같음)